

민법일반 12

- - 제109조
- 착오의 개념
- - 착오의 유형
- □ 표시상의 착오 (오기)
- □ 내용(의미)의 착오
- □ 동기의 착오

- 학설:
- □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인 경우 착오로 인정
- □ 동기배제설
- □ 109조 유추적용설
- □ 법률행위의 내용의 내지 조건인 경우 착오로 인정

-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**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** 이를 이유로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(출처 : 대법원 1984.10.23. 선고 83다카 1187 판결【계약금반환】 [집32(4)민,60; 공1984.12.15.(742)1844])

- 매매대상 토지 중 20~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그와 같은 신축정의를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와 같은 신축정의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 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%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,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
- (출처 :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2000다 12259 판결【매매대금】 [공 2000.7.1.(109),1417])

- 착오의 취소 요건: 1)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, =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2)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
-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**주관적, 객관적 표준**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,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, 토지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.
- (출처 : 대법원 1985.4.23. 선고 84다카890 판결【양수금】 [공1985.6.15.(754),780])

-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**객관적으로 현저**하여야 하고,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.
- (출처 : 대법원 2006.12.7. 선고 2006다41457 판결【청구이의등】 [공2007.1.15.(266),120])

- 착오의 개별유형
- □ 동일성 착오
-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,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,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.
- (출처 :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다37087 판결【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】 [공1996.2.15.(4),503])

- □ 성질의 착오 : 보통은 동기의 착오
- □ 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 : □ 주관적 행위기초론 □ 보충적 해석을 통해 가정적 의사 확정 □ 법률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.

-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소정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
- (출처 : 대법원 1994.6.10. 선고 93다24810 판결【약정금】 [공 1994.7.15.(972),1920])

- □ 소유권 귀속의 착오 : 타인의 소유일지라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(569조)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님.
- 2)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
- 착오 관련 증명책임
-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,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.
- (출처 : 대법원 2008.1.17. 선고 2007다74188 판결【구 상금】 [공2008상,218])
- 착오의 효과 : 제109조 1항, 제141조, 제3자에 대한 효력
- 착오의 적용범위
-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
- - 착오와 사기(제110조)